

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,
11분의 동료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신
「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
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
말씀드리겠습니다.

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
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
「지진재해대책법」이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
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
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
주시기를 바라며,
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
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